

부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2.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2.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2. 14) 상정
-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2.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류재명)

개정이유

-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통·반장의 연령 및 통장의 연임제한규정 신설(안 제5조)
 - 통·반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며 신원조회 실시
 - 통·반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3회 이상 연임가능
- 통·반장의 해촉사유 구체화(안 제5조의2)

3.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4항의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 이 조례 시행 후 현재 재임 통장이 임기만 여를 마치면 그것이 1회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부터 연임 임기가 시작되는가? ○ 임기를 최대 6년 하는 것으로 한다면 3회 연임이 아니고 2회 연임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 신원조회를 꼭 해야 하는가?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지역에서는 통·반장 희망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어 동에서 통·반장 위촉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함 ○ 그렇습니다. ○ 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임 포함하여 총 6년이며 2회 연임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됨 ○ 통·반장도 공무원에 준한다는 상부의 해석이며 나중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신원조회 내용 삽입은 통·반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 제정시 신원조회 문구를 넣지 않고 있고 문구상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은 신원조회 문구를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음

나. 반대토론

- 신원조회 규정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있어 통·반장 해촉시 사유에 대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삽입해야 함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412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15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 내용의 통·반장 자격요건 중의 하나인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거주용 용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자리를 점유하는 것이며 사실관계로서 주민등록과는 관계가 없으며 거주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또한 통·반장은 반드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당해 통·반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며
-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나 각호에 통·반장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최근의 법제정시는 신원조회 문구를 안 넣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며 문구상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신원조회 실시 내용을 굳이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신원조회 실시 조항을 삭제하였음
-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연임 규정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의 의도는 통·반장을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연임을 포함하여 6년으로 하는 안이기 때문에 시의 안대로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3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조정하고
- 예외 규정 즉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6년을 하고 또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6년 기한의 개정취지에 상반될 수 있으며 현재처럼 장기적으로 재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하여 모든 통·반장은 연임을 포함하여 6년만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2항의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을 “당해 통·반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수정하며 “신원조회를 실시 후” 및 “신원조회 결과”를 삭제함
- 안 제5조제4항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부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통·반장은 당해 통·반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

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통·반장의 위촉)</p> <p>①(생략)</p> <p>②<u>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u></p> <p>③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현행과 같음)</p> <p>②<u>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신원조회를 실시 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원조회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u></p> <p>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2.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3. <u>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③.....</p> <p>.....</p> <p>.....</p>	<p>제5조(통·반장 위촉) ①(개정안과 같음)</p> <p>②<u>통·반장은 당해 통·반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③(개정안과 같음)</p>

<p>다. 다만, 통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 통·반장 ……</p> <p>④ ……</p> <p>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p>	<p>④ ……</p> <p>…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 (생략)</p> <p>1.~2. (생략)</p> <p>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3분의 2,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만 직선으로 선출된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p> <p>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p> <p>(신설)</p>	<p>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p> <p>4.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p> <p>5.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p>	<p>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p> <p>1.~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부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관련 제412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반장의 연령 및 통장의 연임제한규정 신설(안 제5조)
 - 통·반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며 신원조회 실시
 - 통·반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3회 이상 연임가능
- 통·반장의 해촉사유 구체화(안 제5조의2)

[수정안 포함]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②통·반장은 당해 통·반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제3항 단서규정 중 "통장"을 "통·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분의 1, 반장은 반원의 2분의 1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
5.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신설)

5.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